

Vol. 278 2017.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n insurance

The Financial Insurance Magazine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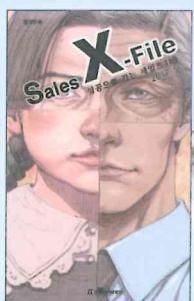
‘가정의 달’… 보험상품 선물 해볼까?

SPECIAL REPORT

보험 – ‘헬스케어’ 서비스 “융합 고도화”… ‘新성장동력’ 우뚝
보험사, ‘지문·흉채인식’ 등 생체인증 도입 움직임 활발
모털해저드의 온상, 중소형 한방병원… 업계, 집중조사 돌입
개정세법發 종신보험 “왜곡 마케팅”… ‘稅테크 저축상품’ 전략
보정성보험 ‘M/S 전쟁’ 끝… “단기 수익보다, 리스크 초점”
新SI보험 “가입문턱 파괴”… ‘보험사각지대’ 해결사 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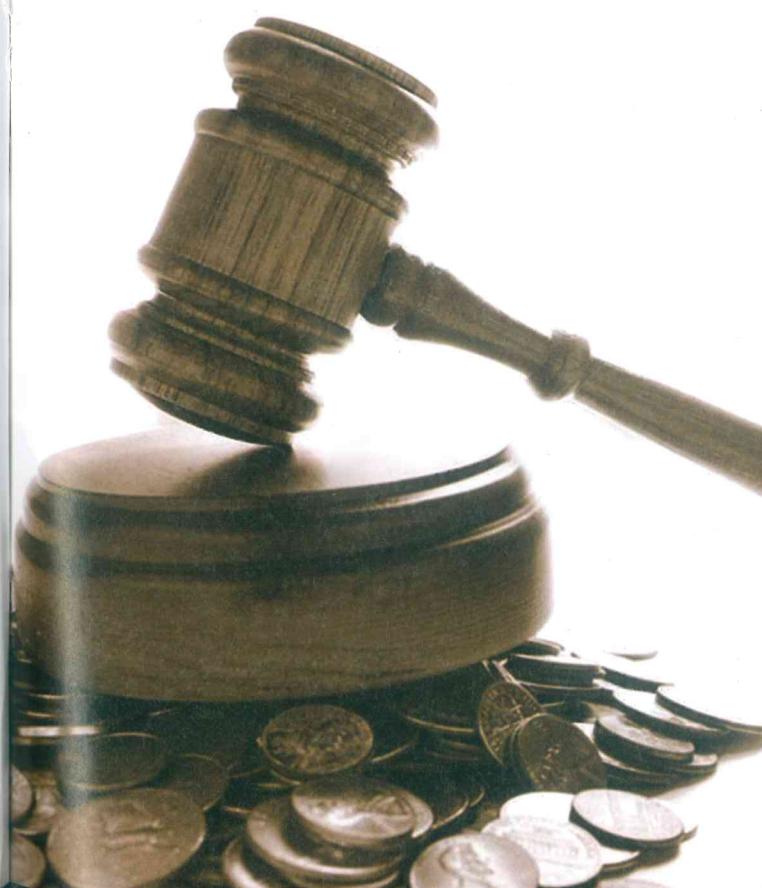
SPECIAL INTERVIEW

전남 장흥 우체국 한창미 FC



‘자기부담금’ 피해자에게 전가는 ‘不當’

자기부담금 문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마땅하다. 보험계약과 무관한 피해자에게 자기부담금 문제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책임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 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사안의 개요]

– 소외인은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무배당사업성공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은 이 사건 건물 및 건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됐다. 그 보상한도액은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 원이다.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제1호) 등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의 ‘기타담보 가입사항’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최고보상한도 :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펌프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시설 이용객 소유의 차량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위 피해자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합계 1억2542만2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피해자들을 대위해 피고에게 위 피해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하도록 돼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위 10만원이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판결]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해 갖는 약관 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 행사하는 것이다.

위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보험계약상의 지급 기준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피고가 피보험자와 사이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 이에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했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은 자기부담금의 공제에 관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평석]

대상판결은 직접청구권에서의 자기부담금 공제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 일정금액에 대해 피보험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한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금액(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접청구권'」을 두고 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 ▲손해배상청구권설 ▲보험금청구권설의 대립이 있는데,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제3자(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면 보험계약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계산된 배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보험금청구권'으로 보게 되면 보험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관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했다. 즉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 것.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견해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즉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채무이지 보험금 지급채무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미리 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 배상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실상계,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에 관한 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병존적 채무 인수'고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면서도,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보험약관에 따른다면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

또한 대상판결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도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상법에 직접청구권을 두게 된 취지가 '분쟁의 1회적 해결'이다. 기준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고, 가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자를 상대로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해 사고에 따른 배상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는 이중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할 필요 없이 가해자의 보험자와 손해배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부담할 자기부담금 만큼의 손해배상금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자기부담금 만큼은 가해자를 상대로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직접청구권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

대상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험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도 보험자와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반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복잡하게 만든 것이어서 찬성하기 어렵다.

자기부담금 문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마땅하다. 보험계약과 무관한 피해자에게 자기부담금 문제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다. [\[InS\]](#)

글_ 박기억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보험면)으로 근무

